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1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 : 김 건 • 박충권 • 안철수

인요한 • 강선영 • 김기웅

권영세 · 김석기 · 조지연

박수영 • 유용원 • 박정훈

윤상현·김용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·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,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.

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

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

나. 북·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 치·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납북자"란 대한민국 국민으	1
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	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	
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	<u>다음 각 목의 어느</u>
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	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
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	
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	
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	
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<u>가.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</u>
	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
	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
	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
	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
	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
<u><신 설></u>	<u>나. 북·중 접경지역 등 남한</u>
	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
	에 의해 납치・체포되어
	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
	<u>사람</u>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